
第11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教保社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9月2日(木) 午後2時

場所 文教保社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1999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教育廳懸案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1999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 88面
-

(14時 26分 開議)

○委員長 李英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115회 임시회중 제2차 文教保社委員會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안전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委員長 李英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歲入·歲出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金相權 副教育監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지역교육장을 소개한 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教育監 金相權; 副教育監 金相權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금번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東部教育廳 教育長 金汶彬, 西部教育廳 教育長 沈德輔, 南部教育廳 教育長 李智遠, 北部教育廳 教育長 鄭在良, 中部教育廳 教育長 洪性九, 江東教育廳 教育長 林鉀燮, 江西教育廳 教育長 金昌伸, 銅雀教育廳 教育長 朴大圭, 城東教育廳 教育長 金甲載, 城北教育廳 教育長 金英淑)

존경하는 李英順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委員님 여러분들께 우리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주실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委員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울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敎育廳은 敎育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의 육성이라는 서울敎育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敎育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사태에 따른 재원감축으로 인하여 98년도 이후 중단된 시급한 시설사업과 敎育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769억원이 증액된 2조 9,34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목적지정경비 246억원과 敎育部가 승인한 지방채 520억원, 기타 3억원을 합하여 총 76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항인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택지개발과 대규모 민영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안전상 위험판정을 받은 학교건물의 개축, 그리고 교실증축 및 노후화장실 보수 등 단위사업별로 수립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승인한 내용대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 사업은 목적 지정된 사업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敎育廳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敎育이 敎育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敎育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孝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企劃管理室長 金孝秀입니다.

존경하는 李英順 委員長님과 文教保社委員님을 모시고 1999년도 서울特別市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 이후 教育部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 편성내역, 우선사용 경비내역, 지방채사업 예산 편성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9,34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2.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4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금 69억 4,200만원, 증액교부금 100억 6,500만원, 보조금 7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회 추경시 반영되었던 사립특수학교인 은평복지학교 교실증축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여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자체부담수입은 52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부교육청 관내 광희초등학교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4억 5,000원과 동작교육청 관내 대림초등학교의 재해복구 공제회 보상금 6,700만원,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

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520억원입니다.

주민부담금수입은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 육성지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사용액 245억 7,800만원, 지방채 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520억원, 광희초등학교 급식실 시설비 1억 4,800만원, 항공소음 피해 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700만원, 고등학교 경상운영비 보정액 3,000만원, 예비비 2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은평북지학교 교실증축비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사용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액 245억 7,800만원의 내역은 특별교부금 사업이 13건에 69억 4,200만원, 증액교부금사업 1건에 100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 19건 73억 6,900만원, 재해복구 및 체육진흥사업 2건에 2억 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52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地方自治法施行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국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教育部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노후화장실 보수사업은 학교 급별 학교수와 학교 급별 사업비로 포괄 승인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할 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사업은 16교 296억 1,000만원, 교실증축사업은 12교 8
억 4,8000만원, 교실개축사업은 21교 129억 4,000만원, 노
후화장실보수사업은 39교 86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교육재정 감소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
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
선사업에 대하여 教育部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편성
하였고 또한 교부금, 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委員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1999年度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9개 教育廳의 신임교육장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돌아가셔도 좋을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金成奎 委員;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洪承采 委員; 부임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과약도 안 되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金成奎 委員; 표결로 해요.

○委員長 李英順; 제 생각에도 계시면 좋겠지만 관례적으로 돌아가셨던 관례가 있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인데요.

○金成奎 委員; 지역교육장님한테…….

○洪承采 委員; 부임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서 당해 지역청의…….

○崔明玉 委員; 金委員님, 필요하다면 9월에 강동 잡혀 있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하다면 합시다.

○委員長 李英順; 金成奎 委員님 고맙습니다.

혹시 8일에도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면 의회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 돌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奎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成奎 委員;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아까 室長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문보다도 본위원이 염려스럽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가 2000년까지 합하면 약 6,466억원 정도가 되는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환방안이나 일단 이자지급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副教育監 金相權; 정말 金成奎 委員님, 저희가 서울교육재정에서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짚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委員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이뤄지기 시작한 명퇴, 명예퇴직수당에 따른 부분으로 해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통한 빚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이번에 저희가 올린 그러한 시설사업의 보수·확충 이 부분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투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된 부분은 이미 저희가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규교사와 교호봉 교사간의 보수차액의 적립을 통해서 상환을 할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정확한 제 기억인지는 몰라도 한 6~7년부터는 동일한 제로선상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흑자의 부분으로 전환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고요.

또 금융기관에 의한 이번의 기채부분은 솔직한 얘기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한 부분 속에 증액교부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 기채주체는 市·道 교육감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이제까지 지방교육자치의 재원이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의 증액교부금을 통해서 앞으로 이 빚을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저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설득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成奎 委員;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정년단축도 되었고, 또 이제 명퇴를 신청하신 교사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새로 신규임용된 교사와 오래 계신 교사님들의 급여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갈만한데요.

자칫하면 교육계에 일선 학교 교사님들의 어떠한 약간 무리한 계획에 의해서 너무나 자칫하면 신규쪽에 치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2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의 부탁입니다.

○副教育監 金相權;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상환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기간의 기채승인은 익년도 1년 거치후 매년 분할상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는 저희가 차입한 이 금액도 결국 저는 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갚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고평과 저호봉 차이의 인

건비 적립금을 통해서 갚아주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중앙정부가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네, 감사합니다.

○副教育監 金相權; 고맙습니다.

○金成奎 委員; 다음은 室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예산안을 보면 노후 화장실 보수라 해서 일률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마다 1개교에 2억 2,000만원씩…….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원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成奎 委員; 네, 그러세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教育支援局長 金南一입니다.

○金成奎 委員; 노후 화장실 보수비라 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2억 2,000만원씩 편성하셨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金成奎 委員; 그래서 적은 지역청은 1개교, 많은 지역청은 3개교에서 4개교…….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많은 데는 3개까지 합니다, 지역청별로.

○金成奎 委員;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4개가 됩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데 아마 제가 우선 받아들이는 느낌이 11개 지역교육청에 노후된 화장실 보수를 할 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너나 없이 우선순위나 이런 것 감안하지 않고 딱 정해 놓으니까 한 지역청에 초등학교는 3개까지, 중학교는 1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내려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청에는 지금 화장실

보수해야 할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는 그렇게 시급한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육청에는 한두 개 학교만 보수해도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물론 교육부에서 승인받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딱 정해서 초등학교는 3개까지, 중학교는 1개까지 이렇게 해서 딱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글썄, 저희가 만든 사업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채액 총 520억 중에 노후화장실 보수에 배정한 예산만 하더라도 86억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저희 생각으로는 학교신설 중단한 사업 이런 데 오히려 더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이나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화장실도 급하다 이런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저희가 실무 선에서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많은 예산액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成奎 委員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教育廳別로 화장실이 보수할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청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할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역청별로 10개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저희가 받는다면 10개 하는데도 20억 이렇게 들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520억을 기채를 하고요. 내년엔 2,280억을 저희가 쓰는 그런 기채승인을 받아서 또 市議會에 보고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또 화장실로 금액을 총 300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러니까 이번에 86억원을 뺀 214억원을 저희가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웬만큼 할 테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물량은 전부 541억 정도가 소요되는 물량입니다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화장실은 내년까지 거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아니, 노후된 화장실 보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교육부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승인을 받는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업시행에 대한 필요성과 긴급성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애로사항 때문이라지만 일률적으로 몇 개교, 몇 개교 딱딱 신청해라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외 부분은 내년에 가서 다 하겠죠.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崔明玉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崔明玉 委員; 崔明玉 委員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教育部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을 때에 매우 의도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하고 소요예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教育部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다 그 의미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서울市教育廳에서 올린 대로, 아까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요식행위로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의원의 입장에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사전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대상사업과 소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던 그 원인이 뭔지,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教育支援局長 金南一입니다.

崔委員님 말씀하신 의도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教育部 승인을 통해서 市議會의 의결은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教育部에 신청을 할 때는 급한 시설중에 학교시설 신축하다가 중단한 시설, 개축·증축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원연수원도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약 150억 정도 저희가 금년 사업물량으로 파악을 하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교원연수원도 지금 공정이 거의 70~80%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년 가까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승인요청 했습니다만 教育部에서 교원연수원은 학생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제외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굳이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을 하면서 쏘아붙이면서 1차 추경시에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일선 학교의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전부 찾아서 넣고 教育部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승인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教育部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할 때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밝혀야 될 것으로 알지만 그 소요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총괄적으로 내지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대로 심의 의결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 委員들이 이 추경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밝혀 보십시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안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제일 도움이 되고요. 만약 하신다면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教育部하고 의논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도액이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20억이다 하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게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20억을 초과해서 25억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教育部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崔明玉 委員;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李東秦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東秦 委員; 李東秦 委員인데요.

崔明玉委員님 질의의 연장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議會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가 예산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추경예산안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안이 대부분이 기채로 이루어진 예산안이라 할지라도 議會의 심의기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教育部에 기채승인을 할 때 대체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教育部에 기채승인을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그런 안을 議會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2차 추경안을 내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教育部에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뭐하러 이것을 제출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통과외레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教育部에 또다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후에 기채승인을 받을 때 역시 똑같은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議會에서 전혀 가감할 수 없다라고 똑

같은 절차가 반복이 될 텐데 이후에는 기채 승인할 때도 사전에 이리이러한 내용의 기채승인을 教育部에 요청하려고 한 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출해야만 議會의 예산심의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企劃管理室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할 때 議會에,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700억 규모의 지방채를 협의중이다라고 사전 보고드린 적이 있어서 그 범위가 520억으로 금년도는 시설비의 사업 집행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520억원만 저희들이 教育部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올려드린 것이고요.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市議會에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었던 것이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 중에 지방채 2,280억원을 추가로 한다고 할 때 총 규모가 2,800억의 시설비 기채가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사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만…….

○李東秦 委員; 사후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절차상의 복잡함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것을 議會에 제출합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議會의 심의를 받는 것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떠나서 議會의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내지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의 복잡함을 들어서 그것을 제출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어떤 업무보고나 이런 형식이 아니

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의 기채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할 수가 있잖아요. 사전설명회 형식이라 할지, 어차피 예산심의는 아닐 테니까 사전설명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보고가 가능할 텐데 그 동안에 그런 것이 생략이 됐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도 기채승인을 하게 될 때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좀 전에는 제가 그 경과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700억 얘기를 하면서 교육부가 사전 기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52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또 기채, 지방채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회 형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의 議會의 예산심의 기능을 없애버린 결과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이대로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네,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가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교육부에 다시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손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 사전설명이나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심의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기채 승인받은 이러저러한 시설비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후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해 봤자 완전히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사전설명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議會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네, 알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崔委員님 하십시오.

○崔明玉 委員; 崔明玉 委員입니다.

지금 室長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다 그런 정도만 대화를 하셨지 이렇게 대상사업과 소요예산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승인을 받겠다, 지방채 발행승인을 교육부에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저도 그런 뜻이고,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심의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이미 사전에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그러지 말고 심의소리 빼버리고 곧바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지방채 발행이 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네, 2000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

다.

○崔明玉 委員;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시고 큰 방향을 정한 다음에 교육부의 승인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羅鍾文 委員님.

○羅鍾文 委員; 羅鍾文 委員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번 기채발행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해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금 현재 2부제 수업하는 데가 화곡초등학교하고 을지초등학교인데요. 을지초등학교는 해결이 되고요. 화곡만 하나 남게 되겠습니다.

○羅鍾文 委員; 화곡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금 그쪽에 학교부지가 마련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羅鍾文 委員; 현재 화곡초등학교는 몇 개 학급이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금 현재 67학급입니다. 그 중에서 다 2부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2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학교부지를 구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학교여건상 어렵나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언제부터 2부제 수업으로 했었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작년부터입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리고 현재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동료의원님께서 D급과 E급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런 D급이나 E급 판정을 받은 교사동에 대한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채하는 사업 중에 교실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羅委員님께서 말씀하신 D급, E급 건물 중 특히 E급은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요. 또 D급 중에서도 노후정도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D급, E급 건물은 공립학교는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 기채까지 하면요.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다만 문제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한 서너 개 있는데 사립학교는 저희가 이것이 일종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처벌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라고 지시를 한 지가 한 1년 됩니다. 그런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중에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폐쇄해 놓고 학생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측 얘기는 철거하는 데도 돈이 꽤 드는데 그 돈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사 건축물은 2개가 지금 E급인데 이것이 교사동 전체가 E급이 아니고, 이 학교들이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5층짜리 건물에 꼭대기에 가건물 비슷한 것을 증축을 했는데 그것이 말하

자면 혈값으로 적은 돈으로 짓다 보니까 그것이 금이 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6층에 있는 교실 몇 개만 철거하면 그것이 건물 전체로는 또 E급이 아닌 게 되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립학교도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계속 해 주시고, 더군다나 씨랜드 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마냥 사립학교한테 자꾸 철거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내년 본예산에는 철거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청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중에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이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실한 건축물의 상당부분의 책임이 사실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羅鍾文 委員; 그렇다면 현재 인가된 학급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고, 인근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教育廳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이 학교들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

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학급 감축까지 하게 되면 그 인근에 과밀학급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노후학교에 대해서도 보수보강공사는 학교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D급, E급이라는 것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3~4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羅鍾文 委員;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 결국 서울시教育廳 정부에서 모든 덤터기는 다 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그렇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러면 유념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증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재 개축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시설비 증액을 많이 했는데, 물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여쭙어 볼게요.

금오초등학교 시설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큰 암반이 나와서 그것을 발파하는 예산만 반영했다고 그러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내년도 기채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羅鍾文 委員; 그런데 애초에 설계할 때에 지질검사 같은 것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다 합니다.

○羅鍾文 委員; 그때 검사를 다 했을 텐데 왜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애초에 지질검사를 할 때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학교건축을 할 때는 구멍을 팝니다. 여러 군데 구멍을 파서 지질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검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멍을 몇 개 파느냐에 따라 이제 돈이 더 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 드문 드문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들 얘기로는 대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파보자, 어떤 때는 물흐를 텐데 한번 파보자 이런 식으로 파보지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시다만 막상 땅을 파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맞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느닷없이 암반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설사업의 경우에 그런 식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초에는 20m만 파기로 했는데 거기 갑자기 모래가 나타나서 10m를 더 파야 되겠다, 공사비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지금 이 금오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파도 사실은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무진동 발파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용하게…….

○羅鍾文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지출

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지역의 관련주민들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애초에 설계도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劉俊相 委員님, 잠깐만요. 金星煥 委員님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金星煥 委員; 우선사용한 내역과 관련해서 절차를 여쭙 볼게요.

우선사용이 敎育部에서 내려온 목적교부금인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대부분 목적교부금입니다.

○金星煥 委員; 대부분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지원금도 있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金星煥 委員; 이 목적교부금 총액이 얼마나 왔다고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245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金星煥 委員; 목적교부금은 그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나오죠?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이것이 지정해서 내려왔으면 이것을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시달하고 그 敎育廳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나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저희 지역교육청 말씀인가요?

○金星煥 委員; 네.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지는 사업도

있고 본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진 사업만 우선 답변해 보세요.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진 사업은 어떤 절차로 목적교부금 사용을 구분하시고 예산배정을 하시게 되었나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목적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보니까 총액으로 주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총액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 알아서 올리라고 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지원했잖아요, 지난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1회 추경 때와 본예산 때는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증액을 시켜 주면 증액범위를 일정액을 정해 주고 지역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해준 바 있었어요.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던 내용에 증액시켜 주면서 그런 경우고요.

목적교부금사업은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집행할 사업과 본청이 집행할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 분할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주는 사업 중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쭙 보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동부교육청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우선사용인데 이것이 예산액이 659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교육청별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었나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이것은 해당부서의 課長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내용 잘 모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나가는 배분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星煥 委員; 課長님 얘기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지금 특기적성교육 사업에 대한 주무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렇게 하시죠.

○初等教育課長 尹仁漢; 初等教育課長 尹仁漢입니다.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것은 각 학교로부터 지역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특기적성 교육부서의 숫자라든지 참여하는 학생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서 그것을 집계해서 저희가 받으면 각 지역청별로 받은 총액을 教育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고 그것을 다시 배부해 주는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교육청별로 신청이 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 것인가요?

○初等教育課長 尹仁漢;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金星煥 委員; 그래요. 남부교육청은 얼마나 받았어요?

○初等教育課長 尹仁漢;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金星煥 委員; 담당하시는 분이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남부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받아서 예산 배분해 주었다면서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教育部에서 주는 목적사업비여서 市議會에서 그냥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도 안해 오셨나요? 어느 教育廳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 못하시나요? 각 교육청별로 다 있다면서요.

○中等教育課長 尹雄燮; 中等教育課長 尹雄燮입니다.

그것은 저희 중등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金星煥 委員;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세요.

○初等教育課長 尹仁漢; 저희 초등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中等教育課長 尹雄燮; 이것이 초·중등이 합동으로 하는데 초등이 중등으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李英順; 누구시라고 했지요?

○中等教育課長 尹雄燮; 저는 中等教育課長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답변하십시오.

○中等教育課長 尹雄燮; 이 특기적성 특별교부금 신청이 원래가 작년도에 이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1차 지원액을 받았고 여기 2억 7,452만 8,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4월 이후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학교별로 당초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教育部에서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가 신청한 액수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부의 경우는 1차 지원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 없어서 그것이 빠졌을 뿐입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런 것인가요?

○中等教育課長 尹雄燮; 그것이 아마 중등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등과장이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이것이 教育部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으면 그 목적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中等教育課長 尹雄燮;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항별설명서의 설명사항을 보면 경비내역은 유사하지만 그 용도는 저희 委員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 中等教育課長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작성 총괄은 누가 하셨나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企劃豫算課長이 했습니다.

○金星煥 委員; 教育部에서 그러면 목적교부금에 대해서 그 용도 지시가 명확하게 내려왔을 텐데 설명사항을 보면 제 각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金星煥 委員; 교과용 도서 연구실험학교 운영 이것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 실험에 의한 실험용 교과서 등등이라고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그 내용이 없고 강남교육청에 보면 내용이 또 달리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목적교부금이면 그 용도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金星煥 委員; 네.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企劃豫算課長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개념을 委員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목적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아닌 일반적인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교육청이든지 어떤 사업소에 한도액을 배분하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 방법대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목적사업 우선사용 내역은 사업별에 따라서 보조금이 되었든 교부금이 되었든 전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에 해당되는 교육청이 있으면 그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은 그 사업이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항별 설명서 34쪽 중간에 보면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 우선 사용에서 450만원 있잖아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제각각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과학실험실습 보조원 지원비 우선 사용 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교육청은 고학력 실업자 해소 및 학교정보화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달아 놓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은 뭐라고 해 놓았는지 한번 보세요. 실습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학생들의 과학실험 실습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실업자 해소 및 학교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教育部에서 똑같은 목적교부금으로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용목적이 이렇게 제 각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데 따르면 教育部에서 목적교부금을 내시하면 그것을 신청해서 市教育廳에서 총괄해서 다시 나누어 준다면요? 그러면 그

내용도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시면 사업명이 중학교 일용직 보조교사 지원 해서 학교교육비에서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강동교육청은 53쪽에 학교운영지원비해서 학교 운영 지원비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보조교사하고 학교 운영지원비하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金星煥 委員; 이것이 다른 내용이라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이것이 다른 내용이라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지원은 어느 교육청이나 목적 지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은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 목을 일치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그것이 34쪽인데요. 34쪽 뒤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는 고학력 실업자 해소 및 학교정보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습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학생들의 과학실험실습교육의 내실화를 기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것이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 주기는 했지만 제각각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것이 우선 사용이어서 목적교부금으로 그 용도가 같다면 그 표현도 일치시켜서 이것을 승인하는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통제 안하셨나요? 그냥 어구만 조금씩 틀린 것이에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는 것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네, 말씀 알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분명히 다르잖아요. 학교정보화 지원하고 과학실험실습교육 내실화를 기함하고 어떻게 같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준 목적교부금 사용내시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그것이 87쪽에 보시면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 해서 상반기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2억 3,1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와서 2억 3,100만원을 가지고 보조인력 154명을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경비내역으로 보면 그것이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로 보면 유사하지만 제각각이라는 말이에요. 경비내역으로 보면 과학실험실습 보조원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사용목으로 보면 학교정보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일일이 다 체크 안하셨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과학실험실에 보조인력 지원하는 것과 전산보조인력 지원하는 것과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金星煥 委員; 다르면 그것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지금 보시면…….

○金星煥 委員; 그러면 더군다나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 지원비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정보화 지원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르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실험 보조원하고 전산실보조원은 사업 자체는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지금 이것이 저희가 잘못된 것 같

습니다, 그 표현을. 같은 내용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항
별설명서를 지역교육청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문맥이나 이런 설명문구를 지역교육청별로 통일
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星煥 委員; 그것이 지금 문구를 통일시키지 못한 정도
의 문제예요?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은 이 교육부의 목적사업비
로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대로 하면?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그러니까 그 경비내역에 보시면 과학
실험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정보화 지원이라고 하고 그 밑에
경비내역에 보시면 600만원, 무슨 450만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金星煥 委員;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그것은 우선 사용내역에 2억 3,100
만원 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2억 3,100만
원이 과학실험실보조원 인건비로 이렇게 국고보조로 된 사업
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잘못되
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星煥 委員; 표현의 잘못 정도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하
튼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 준 국고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
명사항 역시 그 범위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敎育廳이
전체적으로 통괄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허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목적교부금
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다른 데 절대 사용할 수가 없도
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행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여하튼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다음에 국고보 조금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사항을 붙이시려면 각 교육청별로 통일성있게 제출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했습니다.

劉俊相 委員님.

○劉俊相 委員; 시설사업비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教育支援局長 金南一입니다.

○劉俊相 委員; 이 520억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20억이 확정된 배경.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저희 1년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기채신청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까지 했을 때 예산이 약 2조 8,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에 해당하는 2,800억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에 기채가 연초에 아마 시작되었다면 2,800억을 금년에 다 썼을 것입니다. 520억이 된 것은 2,800억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시의회를 통해서 실제 사업비가 학교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9월 중순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월만 되면 물공사를 못한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공사기간이 두세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뽑으니까 약 52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0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崔明玉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서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답변을 미진하게 드렸던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차제에 드리면,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처음부터 학교별로 이름과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양식에 기재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은 것이 520억이었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우선 여기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취합을 했지요, 본청에서?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중단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중에서도 수용계획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디가 가장 급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온 것 없이 본청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대부분은 본청에서 저희가 직접편성을 했고요.

다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확인은 했지요. 이를테면 답십리초등학교 가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 이런 데 대해서 편성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공사기간은 2.5개월 잡으면 얼마 정도 공사비가 있으면 금년 연말까지 되겠느냐 이런 것 물어봐서 그런 식으로 전화 협의 등을 통해서 한 것들이 많고요.

○劉俊相 委員; 그래서 내가 의문이 들어서 자꾸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까도 얘기를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분

명히 듣기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16억이 있어야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 3월이면 계약을 하잖아요, 입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1억뿐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 부족해서, 지금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돈 언제 쓸 수 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이번 기채예산 말씀이시지요?

○劉俊相 委員; 이것 말고 본예산.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내년 본예산은 아무 래도 1/4분기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劉俊相 委員; 그런데 1월, 2월이라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1월, 2월은 실내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바깥 물공사는 어렵고요.

○劉俊相 委員; 그래서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본청에서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현장도 방문하고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답십리초등학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2월까지 16억이 있어야 공사가 되어서 내년 3월에 보기 좋게 입실, 그 학교가 3년 동안 고생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金成奎 委員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기왕에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건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하는 목적이 시급하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면동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이 7억이 책정되어 있는

데 우선 2억만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5억을 이쪽으로 돌려 주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면동초 나는 그렇게 해서 가능한 줄 알고 나왔는데 완전히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했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심의했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통과되었습니다.

○劉俊相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었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제기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답십리초등학교는 마침 실무자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었는데요.

○劉俊相 委員; 거기서 얼마 신청했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여기는 분명히 11억을 신청했습니다. 16억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劉俊相 委員;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여기 교육장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 여하튼 담당자 혼내지 말고 괜히 나 때문에 높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11억 가지고 공사 완결되어서 3억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서 되면 실지 그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들. 그래서 확인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委員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재차 확인해서 추경 의미를 살릴 수 있도

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질의하실 위원님?

許光泰 委員님.

○許光泰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제2차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고 IMF로 인해서 하다 만 시설들 보수 또는 보완해야 되는 예산으로 목적을 달고 내려왔는데요.

추경편성 과정을 누가 설명해 주세요. 敎育廳에서 추경 편성하기까지 일선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企劃豫算擔當官이…….

○許光泰 委員; 안 들으셨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을…….

○許光泰 委員;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敎育廳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선 학교에서부터.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입니다.

일반적인 추경은 전체 추경재원을 파악한 후에 각 지역교육청별, 또 事業所別, 본청은 과별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 전체 재원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許光泰 委員; 아니, 요구서를 받고 분배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려면 일선 학교에서 敎育廳을 거쳐서 그것이 본청으로 와서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역교육청 단위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소요되는 내용들이 1차적으로 수합이 됩니

다.

○許光泰 委員; 그렇죠? 그것을 빼먹고 얘기하시기에 하는 얘기에요.

취합되면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래서 학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학교에서 추가 경정예산 자료를 내라 이렇게는 안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평상시에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를 파악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판단할 적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해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학교하고 관련되는 예산은 학교 운영하기 위한 학교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또 인건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포괄적으로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소요액만큼씩 매달 배부를 해 주고 학교교육비는 1년간의 총 소요액을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요액을 지역교육청에서 평상시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데 학교에서 자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자료파악이 가능합니다.

○許光泰 委員; 충분히 자료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단서를 붙이고 싶네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조금 전에도 劉俊相 委員님 답십리 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있다 보면 일선 학교에서 필요를 요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문의 내지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선 학교현장을 가보면 사실 심각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심각하지 않은데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렸을 때는 필요를 요하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필요를 요했을 때는 현장을 분명히 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판단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투자심사가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현장을 필히 다녀와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하고 있는데 계속 학교에서는 예산 타령이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98년도 대비해서 총 규모는 2조 9,000억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한 1,00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시다만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수당하고 시설비 기채가 4,100억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2,5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무려 4,000억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 적게 된 돈만큼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교육비라든지 시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고정경비는 지금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내가 특정학교, 특정교육청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예가 두세 건이 있었습니다. 教育廳에 연락을 해도 教育廳에서 사람이 나와 보지 않는다,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관심이 없다, 예산이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教育廳에 연락했더니 현장에 가 본 사실이 없어요. 뒤늦게 내가 연락해서 현장에 가 보았어요. 이러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教育廳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원칙을 인정받을 만큼 지역에 관련된 예산의 반영여부의 적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느냐 이 얘기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정말 긴급히 빨리 들어가야 될 곳에 투입되지 않고 조금 늦게 투입되어도 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투입될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이 추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즉, 추경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豫算擔

當官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즉, 일선 지역교육청에 철저히 지시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본청에서 의결된 예산을 배분 지원하는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일단 총 소요가 확인이 되면 그쪽에 배정할 수 있는 한도액을 우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에 내용상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許光泰 委員;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의결되죠? 우리 議會 본회의에서 의결이 끝나면 이것을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대로 배분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배분되면 그 배분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시기와 배분.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議會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許光泰 委員; 저희들이 아마 9월 10일까지는 의결해 줄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최대한도로 빨리인데 날짜가 언제쯤이냐는 얘기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러니까 9월 10일에 議會가 끝나는데 議會에서 教育監한테 통보가 5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5일로 잡고요. 教育監님한테 승인이 내려오면 최소한도 1주일 내에 배정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20일경이면 추경이 일선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가능합니다.

○許光泰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770억 시설보수비 투입, 또 520억원 지채 속에서 만들어진 돈인데 이것이 금년에 투입되면 시급한 것은, 시급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습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것 투입하면 좀 편안하게 학교가 운영될 것 같습니까, 시설보수면에서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아까 教育支援局長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800억이 소요가 나왔는데 2,800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도 금년도 회계 내에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520억을 지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800억 가지고도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의 환경개선은 곤란합니다.

○許光泰 委員; 잠깐만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2,800억은 본예산의 10%를 환산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10%를 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800억이 투입이 되면 지금 학교가 예산타령에다, 지금 일선 학교가 없으면 教育廳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학교가 운영되는데 예산타령과 학교가 운영되는데 시설보수와 학생들 교육환경의 개선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았을 적에 현실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어야 현실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教育支援局長 金南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대신 답변하겠다고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저희가 금년에 2,800억은 그야말로 한도액이 10%이기 때문에 2,800억이고요. 이 2,800억 기채를 내년까지 하면 급한 것은 어느 정도 손을 봅니다. 급한 것이라는 것은 중단된 공사 그런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許光泰 委員; 2,800억이라는 것이 시설보수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한 것이죠?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학교신설이 있고 그다음에 증축, 개축, 화장실까지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분야 속에 2,800억 정도 투입되면 어느 정도…….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2,800억이면 중단된 공사는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원연수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채사업이 아니라서요.

○許光泰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현장얘기하는 것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장에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 이것을 다 손보는데 얼마나 드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노후된 학교, 한 30년 정도 된 학교는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도 D급, E급 아닌 학교가 많습니다. D급, E급은 그야말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될

가 문제가 있다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30년 넘는 건물 중에 D급, E급이 아닌 C급으로 남아 있는 건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보기에겐 외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것 다 개축을 안하느냐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까지 저희가 손을 보려고 하면 어림잡아서 한 2조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해서 학교시설 증·개축은 빼놓고 노후시설 보수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금 보수예산으로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저희가 보수비로 1년에 약 450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보수비로만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렇습니다. 순수보수비만 450억 정도 됩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이제 노후되어서 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許光泰 委員;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것이 개축예산인데요. 그것은 이제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기채사업에서도 개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학교 중에서 상당수 학교를 이번에 설계비를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

내년에는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연간 차이가 나지만 개축비가 그러면 작년엔 얼마나 되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금년도 99년도 경우에 개축비가 785억입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약 1,200억 되네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수선비까지 합하면요.

○許光泰 委員;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것 520억을 여기다 추가시키면 약 1,700, 2,000억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전체예산에 약 10% 소요된다고 보면 되나요, 教育廳 전체예산에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비 및 개축비 이것으로?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가 시설비 총액이 연간 한 2,000억이 되거든요, 작년, 금년 해서요. 재작년 97년 경우에는 저희가 4,000억이 넘었습니다만 그러면 2,000억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보수비와 개축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許光泰 委員; 저는 지금 예산을 이제 물론 예결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教育廳이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 튼튼하게 짓지 못했던 이유도 있겠고, 또 오래되어서 실제로 보수를 해야만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教育廳에서 이렇게 신·개축 및 노후학교 보수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면 다른 데가 빈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학교 내부도 있지만 학부모들의 원성 아까 얘기했듯이요. 진단의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예산이 투입이 절대적으로 되다 보면

학교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가지요.

예산을 이렇게 지금 거기다 소모시킬 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몇 년간은 시설보수를 걱정하지 않고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즉 개축비에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주어져서 다른 새로운 교육, 지금 학교의 환경이 정보화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차등이 상당히 많다는 얘가지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학교는 미리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똑같은 서울의 어린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가지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별회계를 편성해서라도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시설보수를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지금…….

○許光泰 委員; 항상 맨날 얽매이던 예산의 재원확보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비를 비롯해서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2001년부터는 이 회계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준의 유지보수비도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2001년부터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걱정스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 환특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부나 다른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98년, 99년 2년간 시설비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어쨌든 저희와 걱정을 함께 하는 교육부에서 기채를 하도록 전국에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었지요. 그 덕분에 어쨌든 저희는 2,8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 시설을 제대로 보완하는 문제를 저희가 계속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기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년 등록금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등록금을 이룰테면 2배 올린다면 추가로 1조 정도 확보해서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 재원수입이라는 것이 등록금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지금 환특 좀 남아 있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가 이미 다 연초에 배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許光泰 委員; 하나도 없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없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러면 내년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2000년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설비로 많이 투입된다고, 시설보수비, 개축비로 투입된다고 판단하십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건축물의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보수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건물이 조기에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교건축물 경우에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신설예산은 중앙정부가 학교당 100억이든 또 토지구입비까지 계산하면 평균 300억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듬뿍듬뿍…….

○許光泰 委員; 잠깐만요, 일반적인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걱정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책임있는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류상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을 때 그것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나 삼성 같은 그런 큰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튼튼한 학교시설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가 신축하는 건축물은 저도 현장에 나가 봅니다만 상당히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잘 짓고 있어요. 지금은 잘 짓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잘 지었더라면 이만큼

시설보수·개축에 예산투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許光泰 委員; 지금은 이렇게 잘 짓고 있어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잘 짓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는 전철을 누누이 질타, 지적 또는 감사 지적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건축사업을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해서 우리국민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許光泰 委員; 아니,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말고요. 학교건물 얼마나 섬세하게 짓습니까? 학교건물을 운동장터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짓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 잘 모르지만. 그런 건축기술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못 미쳤던 것 아닙니다. 미쳐 있는데 책임있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기에 뒤따라서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현실에 이렇게 필요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시설보수비로, 개축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또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환특이 계속 이루어져서 어쨌든 고쳐야만 수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계속 지속되어서 학교 보수비 걱정으로 인해서 학교현실화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알겠습니다.

(李英順 委員長, 張鎭國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張鎭國;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학교건물은 여타 건축물보다 건축시공이라든가 공사가 상당히 단편일률적입니다. 가정의 이런 건축하고는 달라서 사실 아까 許光泰 委員님 말씀대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정도로 지어서 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왜 유독 학교만 이런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D급, E급 판정이 나오는 건축물이 많으나, 지금까지 교육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갑자기 선진국의 감리사들을 초빙을 해서 감독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교육계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D급, E급의 판정받은 건물만 보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 진정한 2세들의 교육의 현장을 좀더 멋있고 완고한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康珍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珍 委員; 기채는 아직 기채를 일으켜서 돈을 敎育廳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국고에서 나오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하고 국고지원금 중에서 우선사용 안한 것 있나요? 다 우선사용했나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입니다.

지금 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에 그 목적지정사업은 전부 우선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사용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이 245억.

○李康珍 委員; 이미 사용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써

버린 것, 예를 들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 다 썼을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지금 여기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5조에 의해서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69억, 특별교부금은 주로 법 5조2항3호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유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특별교부금은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에 기준재정수요액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라든지 또.....

○李康珍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특별히 특별교부금 지금 약 69억원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69억원 정도 돼요, 특별교부금이?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69억 4,198만 1,000원입니다.

○李康珍 委員; 69억원 정도 되고, 증액교부금은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올라간 것인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증액교부금은 실직자 자녀, 경제사정 곤란자의 학비지원으로 해서 100억 6,5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李康珍 委員;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의해서 지원했다라기 보다는 그것은 그냥 교부

금이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을 했을 텐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각각이 다른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이 법의 제5조제2항제1·2·3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은. 주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여기에 특별교부금 수요가 3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적에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하고요, 또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교육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교육부시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한계성 때문에 보통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난 후에 어떤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 이런 사업들을…….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두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의 특별한 시책에 의해서 시·도가 담당해야 될 사업을 수행할 때 하는 것은 증액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그런 성격입니다.

○李康珍 委員; 아니, 법에 명료하게 교부금,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할 때 교부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대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李康珍 委員; 그 돈이야 교부금으로 내려오든 지원금으로 내려오든 양여금으로 내려오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교부금은 교부금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거

기에 따른 결산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씩 잘 하시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예산 중에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에 의해서 교부금을 추가로 받아서 추경에 올린 것이 170억원 정도 되는데 170억원이 거의, 물론 그 중에 100억원이라는 워낙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면 우선사용 예산이 많거든요. 그렇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쓰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豫算會計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쓰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 쓰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 데 쓸테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라고 생각되거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저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 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 우선사용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우선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조문을 한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제가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豫算會計法, 그리고 地方自治法, 地方財政法의 테두리 내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부금이면 교부금, 양여금이면 양여

금, 보조금이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위법적인 개념으로 각각의 세입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법을 따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국가의 예산은 豫算會計法, 지방의 예산은 地方財政法에 충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 세입항목을 보면 꼭 결산서 같아요, 결산서, 이번 추경에 한해서 보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갑자기 9월에 추경에 올라오죠? 아직까지 대금지급 안했어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다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가 알기로 스승의 날 기념행사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열린 음악회 한 그 경비인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李康珍 委員; 다 지급했는데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이 지난번 추경 후에 목적지정된 교부금…….

○李康珍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돈을 어디에서 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한참 외상거래를 하신 것인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이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모든 예산은 전부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소요액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비는 地方財政法에서 선 절차를 인정해 주는 그런 뜻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게 무슨 제도예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이 地方財政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액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경비는 의회 의결 전에, 예산편성 전에 우선사용해서 쓸 수 있고, 차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우선사용이라는 법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내지는 그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런 뜻은 없습니다.

○李康珍 委員; 예를 들면 지금 교부금에 의해서 한 사업들을 죽 나열해 놨는데 이 중에는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 사업의 규모,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교육개혁을 위해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 내지는 토의가 있는 이후에 그 예산의 편성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이 있는 이후에 편성되었어야 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신청했으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렇죠? 우리 이런 이런 사업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쓸데니까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우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지원하는 경우도 있

고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해서 근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해서 교부해 줄 테니까 쓰라고 한 예산이 뭐뭐 있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학교, 어떤 특수학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측면이라든지, 교원 금강산 연수사업이라든지, 스승의날 기념행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성 평등의식 고취 책자 발간하는 사업, 또 교육마당 21 구독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李康珍 委員; 약 5 대 5 정도 되겠네요, 비율이?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안해 봤는데요…….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라고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교부금을 받은 것하고 약 건별로 보면 5 대 5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시책상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교육청에 다 내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마당 21 구독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럴 것 같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렇겠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李康珍 委員;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통합운영 시범학교 지원이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즉 있다고

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했습니다.

○李康珍 委員; 몇 개 교육청에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물론 빠진 교육청도 있고 들어간 교육청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경을 달달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때 그때마다 추경으로 끼여들기 시작하면 굳이 연말에 예산을 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갑자기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될 사업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적으로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라든지 우리 자체 수업료라든지 총괄적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런 예산편성 후에 어떤 요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재원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세출예산에서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李康珍 委員;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난번 7월에

추경을 했나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6월에.

○李康珍 委員; 6월에 했나요? 6월에 할 때까지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는 없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세입이 도저히 기준재정수입액이 안 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상이 안 되었었나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교육위원회하고 또 시의회하고 회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실직자 경제살리기 교육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 말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해서 받은 교부금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니까 수입액이 모자라서 7월, 8월에 우선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했는데 이제 추경에 올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예요. 6월 추경에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안 올리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85쪽에 보시면 우선 확정된 날짜가 죽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맨 먼저 우선확정해서 쓴 것이 99년 4월 26일, 그 다음에 5월 10일, 그 다음에 5월 13일 이런 식으로 죽 날짜별로 우선사용한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4, 5, 6월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런 예산들이 왜 1차추경에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왔느냐 하는 것이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교육위원회가 지금 예산편성을 1

차 추경은 4월에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후에 우선사용을 한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교육위원회를 4월에 했어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아니, 예산편성을.

○李康珍 委員; 편성을 4월에 하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예산편성을 4월에하고,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심의날짜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아니,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에 변동이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국가예산 운용의 가장 기본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1차 추경할 때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해서 어떤 敎育廳은 올리고 어떤 敎育廳은 안 올리고 그랬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敎育廳에서는 교과교육연구회 경비를 올리고 어떤 敎育廳은 안 올리고 그랬었다고요. 그랬던 것 기억나세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이라는 항목이 어떤 敎育廳에서는 올라오고 어떤 敎育廳에서는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1차 추경할 때도 課長님한테 각 敎育廳 別로 항목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敎育廳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표를 그려 달라고 한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기억나시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때 보면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이 있었는데 어떤 敎育廳은 올라오고 어떤 敎育廳은 안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연구회 지원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무슨 과목별 무슨 교육, 무슨 연구회 이름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산은 결국 비슷하게 쓰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번에 2차 추경하는데 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사용으로 6월에 이미 썼어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것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원된 예산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99년도 교육부 시행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계획서 공모에서 선정된 연구회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 2개팀에 1,000만원, 또 초등학교 50개팀에 2억 4,900, 중·고등학교 191개팀에 9억 4,100, 전국 단위 15개팀에 1억 3,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계획서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채택된 그런 팀에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李康珍 委員; 사업명은 같은데 성질은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그리고 1차 추경 때의 교과교육 그것은 들어가 있는 敎育廳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敎育

廳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차 추경에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전체 규모의 10% 범위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제일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해 와라 그러면 우리는 教育廳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그대로 예산을 인정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 教育廳은 그것을 우선순위에 넣어서 지원을 하고, 어느 教育廳은 그것이 후순위에 밀려서 안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李康珍 委員; 저는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서울시教育廳의 關係公務員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서울시教育廳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과 교부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교육부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즉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타의 부분들이 시범학교 운영·지원쪽에 많이 할애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그런 감을 가졌었는데 서울시教育廳의 추경과, 이것이 저는 큰 테두리로 보면 그 동안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수없이 논란되었던 새물결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일선 학교에 예산을 방만하게 나누어 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데가 많더라 이런 지적들이 많았을 것이예요. 마찬가지로 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선 학교에 법적인 학교운영비 이외에 여타의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를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교사들에게 훨씬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의 예산도 마찬가지로이고 지방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예산을 쓰는 데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교육부에서 작년도에 일선 학교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가관이었거든요. 교장선생이 경조사비 내려온 것 가지고 자기 개인 친인척 경조사비로 지출한 경우가 있지 않나, 또 학교운영비로 내려온 것 중에 그것 가지고 회식비로 많이 쓰지 않나, 정말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실제로 새물결운동에서 지원된 예산 제가 증빙서류까지 다 받아봤지만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한번 회의하는데 떡값이 30만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지출된 소위 말해서 간이세금영수증을 붙여서 영수증이라고 첨부해서 올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敎育廳 자체 내에서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지금 서울시敎育廳의 많은 예산들이 시범학교다, 무슨 학교다, 무슨 학교다 해서 학교로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李康珍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건대 시범학교, 실험학교 다 좋아요. 결국 교육예산은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가능한 한 행정비를 줄이고 일선 학교에 돈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데 일선 학교에 돈을 주되 그 이후에 서울시教育廳에서 일선 학교에 대해서 내지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느 議員님이 질의하셨을 때 教育廳에서 답변하셨지만 지역교육청의 예산결산에 대해서 한 번도 심의해 보고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내려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물론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틀 예산을 견고하게 짠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다 보면 추경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특히, 지금이야 IMF상황이고 하니까 세수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하니까 추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은 안 일어나면 가장 좋고 완벽한 예산편성일 것이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정말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지원금에 의해서 내려오는 추경의 편성들이 과연 이것이 추경편성의 사유가 되는가, 이미 충분히 예측되고 예측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지난 6월에 1차 추경할 때에도 충분히 계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교육부는 수시로 이것 돈 줄테니까 해라, 이것 돈 줄테니까 해라 그런 일들은 해마다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추경 안했잖아요. 그 다음 본예산 할 때 넘어가기도 하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것 아니에요, 한번 정도에서 추경에서 끝내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은 議員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연도 이월금 540억 가지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채발행 시설비 총당해서 520억이 지금 말씀하시는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것은 지금 추경을 520억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20억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11월이 되었든 12월이 되었든 마지막 추경때 일괄해서 반영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520억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은 자료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자료요구를 할게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제5조에 의해서 지금 교부금을 죽 받았는데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해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 신축,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98년, 99년 두 해 동안에 서울市教育廳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 신청하는 양식이 있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교부금 말고 보조금 금액 중에서 1억 이상 되는 것의 신청서, 이것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것 아니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지요.

○李康珍 委員; 그 중에는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教育廳은 어떻게 교부금을 받나요? 재원을 수입액과 수요액을 딱 맞추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냥 딱 정해주는 것만큼만 받나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무슨 교부금 말씀이십니까?

○李康珍 委員; 보통교부금 받을 때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教育廳이 1년 동안 살림살이하는 데 총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전국 市·道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산정해 놓은 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을 거기서 공제를 합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뺀 양여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우리 자체 수입 이것을 전부 합쳐서 그것을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해 줍니다.

○李康珍 委員; 그리고 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결산 끝났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다 끝났고요. 지금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李康珍 委員; 지금 결산검사는 했잖아요?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검사는 했습니다.
- 李康珍 委員; 결산도 다 끝났고, 지금 교육위원회에…….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교육위원회심의회가 끝났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에 계류중입니다.
- 李康珍 委員; 서울시議會에 자료가 다 왔나요? 그러면 됐어요. 그 자료만 일단 주세요.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98, 99년도 보조금신청내용요?
- 李康珍 委員;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또 요구받았나요?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안 받았습시다.
- 李康珍 委員; 지난번 받은 것을 가지고…….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이번 추경은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520억 가지고 했기 때문에…….
- 李康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라 하더라도 일선 초등학교나 이런 것은 일선 교육청에서 주관하니까 요구받고 이런 것은 없나요? 아니,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화장실은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답니다.
- 李康珍 委員; 그러면 받은 것이지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러면 받은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만 받았나요?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런 것 같습니다.
- 李康珍 委員; 요구서 있지요. 그 중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 안한 것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委員長代理 張鎭國;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李康珍 委員님이 질의한 가운데 지금 2차 추경에도 사실상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2차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이런 2차 추경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떤 시설사업이 되었든, 무슨 일반적인 교육사업비가 되었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 시설비 같은 것은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설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52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본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라든지 교육시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鎭國;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화되어서 내려왔습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張鎭國;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그러한 사항으로 전개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張鎮國; 그렇게 되면 혹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사전심의 하기 이전에 벌써 우선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한 地方財政法 제36조를 나쁘게 말하면 악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 법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100이라는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50을 대고 자체에서 50을 충당한다, 그런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소요가 100이라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 목적이 지정된 그런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기 이전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이라고 할지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목적지정 해서 총액을 지원을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張鎮國;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어에 우선사용이라 하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우리가 대처한다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전개되었을 때 그것을 미처 2차 추경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기 이전에 꼭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스승의

날 열린 음악회 때문에 우선사용을 했다, 또 금강산을 가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받기 이전에 우선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교사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열린 음악회를 열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예산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張鎭國;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李康珍 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성격이 다소 내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植 委員;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3회 추경을 할 예정입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企劃豫算擔當官입니다. 3회 추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李海植 委員;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이번 2차 추경 편성 후에 또 목적지정 그런 경비들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고

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양여금 재원이라든지, 또 어떤 보통 교부금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내시액보다 추가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규모로 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안으로 본예산하고 같이 추경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99년도 회계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海植 委員;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러면 그것을 추경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99년도 회계는 전부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李海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목적지정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우선 추가경정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예산총계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어쨌든 99년도 예산을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러면 결국은 3회 추경을 하겠네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분명히?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李海植 委員; 그리고 이것이 우선사용한 내용 중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우선사용을 했거든요. 마포평생학습관만, 평생학습관이 4개가 있는데 마포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평생학습관이 지금 서울에 4개가 있는데요.

평생학습관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에 지정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시범적으로?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다른 평생학습관에는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李海植 委員; 글썬요, 여기 보면 특별강좌 운영하는 것하고, 그리고 8월 3일 사용한 것을 보면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어느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李海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마포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한 내역.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는 특별강좌를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아니, 그것은 5월 10일에 1,000만원 사용한 것이고, 8월에 보면 또 있잖아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8월요? 그것이 1,000만원이 5월 10일에 한번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또 한번 보조가 되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000만원이 됩니다.

○李海植 委員;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2,000만원을 99년도에 평생학습관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만 우선 재원이 저기하니까 1차로 1,000만원 주고 나중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海植 委員;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방채 조서에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치가 죽 명시가 되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것이 사실 상 연차별로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리고 2,000억 원 정도의 추가 기채발행 계획이 또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에 대한 절차,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승인해 주고 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무슨 어떤 제도상의 큰 변화없이 지금 현상태로 이런 것을 감내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설비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시설비에는 이자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네, 이자만. 그런데 이것이 520억 원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2,280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IMF 이전에 우리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을 보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시설비 예산편성 하는 규모가요.

그런데 IMF로 인해서 시설규모가 아주 대폭 줄어들어서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일단은 예산을 좀 당겨 쓴다 이런 취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재정이 확보되면 이것 짚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李海植 委員;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육재정이 특별하게 어려움을 받았던 것이 결국은 교육재정에 있어서 약 2/3 이상이 경직성 경비, 특히 교사들의 월급, 인건비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2/3가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2/3 이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그에 따라서 줄일 수가 없으니까 교육지책으로 교사 정년을 단축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특히 교육예산은 어떤 소비세 이런 것들에서 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국가경제 자체가 하향곡선을 그리면 교육재정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고 예산이 늘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것이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국가 전망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재정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육재정의 재원확보가 거지반 전부 세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예산을 GNP 대비 6%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약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제도적으로 어떤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똑같은 현실에서 계속 지방채만 쌓여간다고 하면 이것이 아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다 승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교육재정은 허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랬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제안이나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 제도적 변화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압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일선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데 또는 지방채를 갚아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전혀 그런 것은 전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도별로 시설비 재정규모를 볼 때 지금 이것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

다. 그렇게 되면 3년인데 2,800억을 3년에 나눈다고 보면 연간 한 900억 정도 시설비, 그런데 아무리 지금 재정이 어려워도 지금 시설비가 한 2,000억 정도는 계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900억을 적립금으로 놔두고 나머지 한 1,100억 정도는 다른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李海植 委員; 지금 520억에 대한 지방채가 2002년까지 끝나는 것이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2002년까지 끝납니다.

○李海植 委員; 그러면 추가로 2,000억 이상을 발행할 지방채도 2002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것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2003년에 끝나겠지요.

○李海植 委員; 그런데 課長님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시설비가 약 4,000억 정도 연차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겨 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설에 투자돼야 될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과거의 통계치입니다. 과거에 매년 본예산에서 시설비에 할애할 수 있는 어떤 규모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海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국 작년 예산에서 시설비가 거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그렇습니다.

○李海植 委員;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는 생기는 것이지요,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수요는 생기고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필요성은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방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압박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우선, 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앞당긴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李海植 委員; 어떻게 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는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어떤 제도적인 개선안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좋습니다. 이 질문은 하여튼 특별히 더 대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까 金星煥 委員님 질문할 때 支援局長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D급, E급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E급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教育支援局長 金南一입니다.

이번 저희가 기채를 함으로 해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착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비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E급 학교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아직 배정도 안해 놓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海植 委員; 알겠습니다.

본회의때 車元甲委員님 시정질문한 내용이고 그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李海植 委員;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떤 委員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D급, E급 판정을 받은 교사의 소재지, 규모라든지 또는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해나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완료하겠다 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제출하겠습니다.

○李海植 委員;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E급 판정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4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받아 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진단할 때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즉 첨부가 되었겠지요. 그런 것까지 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張鎭國 幹事, 李英順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崔委員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崔明玉 委員;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 할 때 관계서류 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사본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崔明玉 委員; 추경과 관련해서 어떤 추경의 방향이라고 할까, 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른

대상사업,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
를 해서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
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가 지금 教育廳에 재정협의회라
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나
소요예산 같은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안을 만들어
서 재정심의회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실은 그 심의회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
조 8,000억이 조금 모자랐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이왕이면
2조 8,000억 10% 맞추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증액
결정까지 委員會에서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崔明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적에 따른 대상사업이라든지 소요예
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명시한 것이
교육부의 지시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부에 하
나의 승인에 따른 어떤 요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崔明玉 委員;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명시
해야 된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교육부에서 받은 문서를 저희
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서 이렇게 해
서 1번 사업명, 2번 승인신청액 즉 해서 14번 심지어는 서약
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서울시教育廳 관계자와 교육부와의 약속사항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단순한 지시사항인지,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教育部하고 教育廳의 약속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6개 市·道에 똑같이 내려간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崔明玉 委員; 전혀 그렇지 않다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합의해서 서울시教育廳이 의논해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정하자 이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崔明玉 委員; 그런데 그 지시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냥 지시 아닙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제가 지금 그 법적 근거는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틀림없이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崔明玉 委員; 틀림없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없지요.

○崔明玉 委員;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빨리 찾아서 정식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地方自治法 115조하고 同法施行令 제45조라고 되어 있는데…….

○崔明玉 委員; 거기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崔明玉 委員;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대상사업과 소

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빨리 제시하세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찾아서 추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崔明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단순히 教育部의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지시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지시는 教育部와 서울시教育廳간의 문제지 그 지시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이렇게 되면 심의도 아니지요, 심의권 자체가 유아무야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지금 여기 법령을 제가 읽어드리면 地方自治法施行令 제45조에 보면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崔明玉 委員; 당연하겠지요.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 추측입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16개 市·道를 상대로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아마 통일된 양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16개 市·道에 내려보냈다고 추정이 갑니다.

○崔明玉 委員; 그런데 그것은 교육부의 임의사항이고, 지금 관계법 조항을 읽어 보시는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예요. 당연히 그렇게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서울시教育廳에서 저

희쪽에 제시하고 있는 제출한 추경예산안처럼 꼭 이렇게 대상사업이라고 할까, 또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전혀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教育部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대상학교라든가 사업내용, 물량, 금액 같은 것을 명시해서 教育部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우선 집행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기채 승인하는데 능히 세부사업까지 보자고 할 것 같습니다.

○崔明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예산안을 짜면서 또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안을 작성해서 議會에 제출했을 때 반드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무엇이 불쾌하느냐 하면, 불쾌하다기 보다는 이것은 예산심의 요청이 아니라 무슨 의결승인 요청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심의여지가 저희들에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와서 저희들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의결해 달라는 것이요, 안 그러면 세 번째 의결할 것을 첫번째로 당겨 달라는 것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오늘 委員會에 와서…….

○崔明玉 委員; 그 이야기를 자꾸만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과 관련해서 공문이 왔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崔明玉 委員; 뭐라고 왔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올려라 그렇게 왔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英順; 국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는 그 뜻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관점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예산편성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늘 유기적인 의견교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더 시급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늘 지적되는 부분이 아납니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崔委員님께서 당초에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문서를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공문과 구체적인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이 다 첨부돼 있는 것이고. 이 책자는 이번에 저희가 기채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이미 만들어서 교육청에 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에는 교육부에서 발행한 지방채 발행지침 책자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그대로 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대상사업하고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그렇습니다. 책자를 제가 나중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표까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틀림없어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틀림없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했던 말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그렇습니다.

○崔明玉 委員;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었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별도의 공문은…….

○崔明玉 委員; 아니, 지금 대충 520억원이라고는 지방채 발행승인을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전혀 없었던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教育支援局長 金南一; 10%…….

○崔明玉 委員; 국장님, 국장님.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崔委員님, 틀림없이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崔明玉 委員;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지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10%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는 그 공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崔明玉 委員; 그것이 전부예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 공문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채 관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책자로.

○崔明玉 委員; 국장님, 내 솔직한 의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신청해라,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절대로 제가 볼 적에 이렇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이나 소요예산을 명시를 하라고 할 그럴 리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의해석을 해서, 과대해석을 해서 이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편리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권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당시로서는 10% 기채를 해 준다는 데 대해서…….

○崔明玉 委員; 방금 지침이라고 하셨죠? 어떤 지침을…….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이 책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자세한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증·개축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가,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 늦게 해도 되는 부분, 이런 시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차에 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그런 판단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다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사전설명회를 갖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절감

을 하고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러면 지금 학생수용시설 확충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에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하고 지금 교육행정기관운영비라고 해서 22억원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목적하고? 목적이 지금 두 가지로 거의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학생수용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교육행정기관운영비 22억원 투입하는 것?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운영비는 저희가 기채하지 않았는데요.

○崔明玉 委員; 그래요?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희 기채사업에는 시설비 기채는 없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화장실 현황, 화장실에 투입하는 돈이 86억원이죠?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네.

○崔明玉 委員; 그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급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金成奎 委員님 지적이…….

○崔明玉 委員;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러니까 민원도 받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고 관점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고 우리 나름

대로의 정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개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추경예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것이에요?

나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런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것 바늘도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전혀 스페이스가 없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보고?

다시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주지를 않고 그냥 참…….

그리고 지침, 지침 그러는데 그 지침에 말이죠,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것처럼,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사업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을 명시 하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도에 모순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본 위원회가 필요가 없게 돼요. 기채 발행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다 뭐하러 제시를 해요? 지침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이 예산안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2000년도 본예산 때문에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면서요, 한 2,000억원. 그렇죠? 그 때도 예산심의 요청을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심의권이 없는데? 또 그때도 이렇게…….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그래서 그때도 저희 생각에는, 아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전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저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35分 會議中止)

(18時 0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英順;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許光泰 委員님.

○許光泰 委員; 許光泰 委員입니다.

오늘 제2차 교육청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안타깝고 또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제 말씀을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자체가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데 따른 관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서울시위원, 즉 문교보사위원회에 사전에 조율과 서로의 의견 교환이, 또는 사전에 보고가 있지 못한 데 대한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따라서 시설보수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앞으로의 시설보수비에 대한 환특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데 따르는 교육청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줘야만 되는 이런 것을 부탁을 하면서.

특히, 다음에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분명히 심의하고

의결하는 문교보사위원회와 사전에 의견이 있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번에 있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통과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원안대로

○委員長 李英順;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우리 許光泰 委員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더 심도있는 그런 다각적인 안목에서 편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許光泰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동의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2.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8時 05分)

○委員長 李英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金炳哲 教育政策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政策局長 金炳哲; 教育政策局長 金炳哲입니다.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法律 및 同法施行令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우리 教育廳 교육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 및 학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시행령에서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 거리가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동조항을 삭제하고, 학원의 부제교습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동조항을 삭제하며, 우리 教育廳 교육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성인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하여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습소의 부제교습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동조항을 삭제하며, 학원의 강사 및 생활지도사 명단 제출시기를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등록시 제출토록 하며, 변경시에는 15일 이내 통보토록 통보기일을 완화하고, 학원의 수강료 제출시기를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등록시 제출토록 하며, 변경시에는 7일 전까지 통보토록 통보기일을 완화하고, 1년 이내에는 수강료 변경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현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 외국어회화를 제외한 보통교과목으로 규정하여 조례로
법제화하며, 시행령의 교습과정 변경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조정하고자 합
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15쪽의 신규대조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
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
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건에 대해서 委員님들의
의견조정도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學院의設立·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英順; 오늘 예정되어 있던 업무보고의 건은 오는 9월 9일 강동교육청과 함께 업무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副教育監을 비롯한 서울시教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자원봉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건, 서울시 가정도우미제도 개선방안의 건, 노숙자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관계자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12分 散會)

○出席委員

李英順 金星煥 張鎭國 金成奎

羅鍾文 劉俊相 李康珍 李東秦

李禮子 林浩植 崔明玉 許光泰

洪承采 李海植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教育廳

副教育監 金相權

企劃管理室長 金孝秀

教育政策局長 金炳哲

教育支援局長 金南一

企劃豫算擔當官 金東善

初等教育課長 尹仁漢

中等教育課長 尹雄燮